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취직 사업장 (사업에 고용된 경우)	(4) 사업장명 (6) 소재지 (7) 취직일		(5) 대표자 성명 (9) 월평균 임금액 원		
	(10)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11)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 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영업을 양도 · 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합병 · 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 해당 없음		
자영업 사업장 (자영업을 하는 경우)	(12) 사업장명 (14) 소재지 (15) 사업 시작일 (17) 업종		(13) 대표자 성명 (16)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지급계좌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수수료 없음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공지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⑪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3. ⑫ ~ ⑯란은 재취직하지 않고 청구인 자신이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⑰란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5. ⑱란은 재취직한 사업장으로부터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처음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⑲란에는 재취업 후 1년간 받은 월평균 임금(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
 7. ⑳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㉑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㉒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종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8. ㉓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9.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